

② 단,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겸직 목적의 공익성*, 겸직 활동 결과물의 성격**을 종합 고려하여, 겸직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겸직 허가 가능

* 에듀테크 업체에서 에듀테크 소프트랩 등 정부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컨설팅, 디지털교과서 개발, 교원연수자료 개발, 자문 등

** 학원 수강생 등 특정인이 아닌 대중에 판매·활용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

예시 1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계약하여 문항 판매 및 교재를 제작하는 경우

- ▶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등록한 학생들만을 위한 교재 활용 등을 목적으로 문항을 판매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영리행위에 해당함

예시 2 겸직을 금지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계속성이 없는 일회성 영리행위 또는 비영리행위를 하는 경우

- ▶ 계속성이 없는 활동은 겸직 신청 및 허가 대상은 아니나,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도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. 계속성과 관계 없이 겸직을 금지하는 학원 등에서의 특강 등 활동은 교원의 공정한 교육활동 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,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함

예시 3 일반출판사 학습교재의 개념 설명 또는 문제풀이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

- ▶ 학원업과 관련없는 출판사와 계약하여 학습교재의 개념 설명 또는 문제풀이 영상을 제작, 출판사 홈페이지 등에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교재 등 학습자료를 제작하는 연장선에서 겸직 허가 가능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, 해당 영상이 유상으로 제공되는 경우 원격교습학원 인터넷강의와 다르지 않으므로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함

예시 4 검인정 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와 계약하여 교과용 도서(검인정) 또는 학습교재(참고서, 문제집)를 저작하고 인세 등을 받는 경우

- ▶ 검인정 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참고서, 문제집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교과서 출판 업무의 연장선에서 학생의 자율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성이 있으므로, 직무 능률 저하 우려 등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

예시 5 학원업을 겸하는 에듀테크 업체와 계약하여 교재 및 자료개발 컨설팅에 참여하는 경우

- ▶ (학원업과 관련성이 있더라도) 에듀테크 업체에서 정부 사업 등을 위한 컨설팅, 콘텐츠 개발, 자문 등에 참여하는 경우 공익성이 있으므로, 직무 능률 저하 우려 등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. 다만, 겸직 활동이 에듀테크 업체의 사교육 등 영리활동이 아닌 공익 목적 또는 정부사업 관련 활동임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

□ 사교육업체가 아닌 경우의 겸직 허가 원칙

공무원 겸직 허가 심사 기준에 따라 직무 능률 저하 등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속기관 장의 겸직 허가*를 얻어 겸직 가능

* 직무 능률 저하 우려,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, 국익에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,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허가

① 평생직업교육학원

- (범위)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(직업기술, 성인 어학 등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)
- (업무) 강의, 컨설팅, 교재 저술·감수, 문항 출제 등